업무분장세칙

제 정 2006. 9. 29 개 정(1) 2006. 12. 19 개 정(2) 2007. 7.03 개 정(3) 2008. 3.17 정(4) 2009. 8.20 개 개 정(5) 2010. 4.22 개 정(6) 2010. 6.07 개 정(7) 2011. 2.28 개 정(8) 2011. 12. 30 개 정(9) 2012. 7.16 개 정(10) 2013. 6.28 개 정(11) 2014. 2. 19 개 정(12) 2014. 5. 14 개 정(13) 2014. 8. 25 개 정(14) 2014. 11. 11 개 정(15) 2014. 11. 28 개 정(16) 2015. 4. 7 개 정(17) 2015. 9. 21 개 정(18) 2016. 2.29 개 정(19) 2016. 8. 4 개 정(20) 2017. 7. 13 개 정(21) 2019. 3. 7 개 정(22) 2019. 5. 29 개 정(23) 2019. 8. 23 개 정(24) 2019. 12. 20 개 정(25) 2020. 7. 7 개 정(26) 2020. 10. 29 개 정(27) 2021. 9. 10 개 정(28) 2022. 1. 25 개 정(29) 2022. 7. 26 개 정(30) 2023. 6. 29 개 정(31) 2024. 3. 27 개 정(32) 2024. 12. 26 개 정(33) 2025. 4. 30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직제규정 제3조(조직편제) 제4항에 의거 각 부서의 업무분 장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분장의 원칙) ①각 조직단위는 직능에 따라 배분된 범위의 분장업무를 명확히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각 조직단위는 분장의 한계를 유지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.
 - ③각 조직단위는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관하여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조(특명사항의 처리) 본 세칙에 불구하고 사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.

제2장 투자운용부문의 업무분장

제4조(미래전략본부) 미래전략본부는 미래전략실, 자산배분실, 거시ESG실의 업무를 총괄하다.

제5조(미래전략실) 미래전략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전략적 자산배분 정책)

- 1. 자산배분 정책 수립·조정 및 실행 관련 업무
- 2. 전략적 자산배분 기법 연구개발
- 3. 투자자산군 및 관련 벤치마크 연구

(투자기획)

- 4. 투자운용부문 내 기획 및 조정업무 총괄
- 5. 신규 투자자산군 분석 및 발굴
- 6. 투자운용부문 · 본부 · 부서 KPI 설정 관련 업무
- 7. 투자 관련 위원회 간사 업무
- 8. KIC 투자정책서 및 관련 내규 제·개정 업무

(자산위탁에 관한 사항)

- 9. 위탁기관과의 자산위탁계약 총괄
- 10. 위탁자산 운용수수료 관련 업무
- 11. 위탁자 반기보고 및 상시 요청사항 대응업무 총괄
- 12. 위탁자산 유치에 관한 기획 · 통할

(투자협력)

- 13. 국내외 기관과의 투자협력에 관한 업무
- 14. 국내외 네트워킹 업무 통할

(전략적 투자)

- 15. 전략적 투자 전략 수립 및 투자 대상 발굴 업무
- 16. 전략적 투자 실행 및 관련 부대 업무

(기타)

17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6조(자산배분실) 자산배분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운용)

- 1. 전략적 비중조정(ST)
- 2. 전술적 자산배분(TAA) 포트폴리오의 운용
- 3. gTAA 간접운용 전략개발 및 계획수립
- 4. gTAA 위탁운용사 선정·관리 업무
- 5. 전통 절대수익자산 운용 및 관리

(자산배분 운용기획 및 집행)

- 6. 연간투자운용계획 수립 · 변경 관련 업무
- 7. 전통자산 목표초과수익 설정 및 배분 관련 업무
- 8. 대체투자 약정계획 수립 및 총자산 추정 관련 업무
- 9. 위탁자산의 배분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
- 10. 리밸런싱 정책 수립 및 집행 총괄
- 11. 위탁자산의 유동성 운용·관리 (Treasury)
- 12. 펀드별 투자가이드라인 제·개정 및 관리
- 13.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및 조정 총괄
- 14. 벤치마크 사용계약 및 관련 업무
- 15. 투자 데이터 분석 업무의 기획 및 통할

(투자 전략 수립)

- 16. 신규 투자전략개발
- 17. 경제·산업·섹터 리서치를 통한 투자 기회 발굴
- 18. 금융 기법ㆍ기술 및 시장 구조 변화 조사ㆍ분석
- 19. 자산배분(TAA) 및 포트폴리오 수립 관련 조사·분석

(기타)

20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7조(거시ESG실) 거시ESG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거시·정책 리서치)

- 1. 거시경제와 지역별 정책에 대한 조사·분석 및 전망과 이와 관련 모델 개발
- 2. 금융시장 자산군별 조사·분석 및 전망
- 3. 거시경제·정책·금융시장 관련 분석·전망 보고서 발간 및 대내외 전파 업무

(책임 투자)

- 4. 책임투자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
- 5. 전사적 ESG 통합 체계 운영
- 6. ESG 위탁운용사 선정·관리 업무
- 7. 주주권리 전문기관 선정 등 스튜어드십 관련 업무
- 8.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업무
- 9. 전통·대체투자 검토에 대한 ESG 평가 및 보고
- 10. 녹색 및 사회투자 자금 및 프로젝트 관리
- 11. 지속가능투자보고서 등 보고서 발간 및 공시
- 12. 국내외 책임투자 협의체 활동 등 협력 업무

(기타)

13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8조(중권운용본부) 증권운용본부는 주식운용전략실, 글로벌주식운용실, 퀀트주식 운용실, 채권운용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9조(주식운용전략실) 주식운용전략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주식 운용전략)

- 1.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 계획 수립 등 총괄
- 2. 주식 포트폴리오 내 유동성 및 비중 관리

(주식 직접운용)

- 3. 주식 직접운용 전략개발 및 계획 수립
- 4.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 및 관리
- 5. 주식운용관련 조사 · 연구
- 6. 산업별/섹터별/기업별 조사·분석
- 7. 보유주식 관련 Corporate Action (공시사항 등) 수행

(주식 간접운용)

- 8. 간접운용 전략개발 및 계획수립
- 9. 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업무

(기타)

10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0조(글로벌주식운용실) 글로벌주식운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펀더멘털 분석을 통한 주식 직접운용 전략개발 및 계획수립
- 2. 펀더멘털 분석을 통한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 및 관리
- 3. 주식운용 관련 조사·연구
- 4. 산업별/섹터별/기업별 조사·분석
- 5. 보유주식 관련 Corporate Action (공시사항 등) 수행
- 6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1조(쿼트주식유용실) 퀀트주식유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퀀트 직접운용)

- 1. 퀀트 모델을 이용한 직접운용 전략개발 및 계획수립
- 2. 쿼트 모델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운용 및 관리
- 3. 퀀트운용 관련 조사·연구
- 4. 보유주식 관련 Corporate Action(공시사항 등) 수행

(기타)

5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2조(채권운용실) 채권운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채권 직접운용)

- 1. 채권 직접운용 전략개발 및 계획수립
- 2.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운용 관리
- 3. 위탁자산의 유동성 운용·관리 (Transition, Cash, Execution등)
- 4. 채권운용 관련 조사·연구
- 5. Credit 관련 발행사별 신용분석
- 6. 보유채권 관련 Corporate Action(공시사항 등) 수행

(채권 간접운용)

- 7. 채권 간접운용 전략개발 및 계획수립
- 8.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·관리 업무

(기타)

9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3조(대체투자본부) 대체투자본부는 사모주식투자실, 부동산투자실, 인프라투자실, 절대수익투자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4조(사모주식투자실) 사모주식투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사모주식 투자대상 발굴·분석 업무
- 2. 사모주식 투자 선정·계약·집행·회수 관련 업무
- 3. 사모주식 포트폴리오의 관리·평가·보고 관련 업무
- 4. 사모주식 운용계획의 수립
- 5. 사모주식 운용사에 대한 지분투자
- 6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5조(부동산투자실) 부동산투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부동산투자)

- 1. 부동산 투자대상 발굴·분석 업무
- 2. 부동산 투자 선정·계약·집행·회수 관련 업무
- 3.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관리·평가·보고 관련 업무
- 4. 부동산 운용계획의 수립

5.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

(세무 기획)

- 6. 위탁자산 세무업무의 기획 및 통할
- 7. 대체투자 세무구조 전략 수립 및 관리

(기타)

8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6조(인프라투자실) 인프라투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인프라 투자대상 발굴·분석 업무
- 2. 인프라 투자 선정·계약·집행·회수 관련 업무
- 3. 인프라 포트폴리오의 관리·평가·보고 관련 업무
- 4. 인프라 운용계획의 수립
- 5. 인프라 투자 관련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
- 6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7조(절대수익투자실) 절대수익투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혜지펀드)

- 1. 헤지펀드 투자대상 발굴·분석 업무
- 2. 헤지펀드 선정·계약·집행·회수 관련 업무
- 3.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의 관리·평가·보고 관련 업무
- 4. 헤지펀드 운용계획의 수립
- 5. 헤지펀드 투자 관련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

(사모채권)(Private Debt)

- 6. 사모채권 투자대상 발굴·분석 업무
- 7. 사모채권 선정·계약·집행·회수 관련 업무
- 8. 사모채권 포트폴리오의 관리·평가·보고 관련 업무
- 9. 사모채권 운용계획의 수립
- 10. 사모채권 투자 관련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

(기타)

11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18조(해외지사) 해외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관할지역 시장분석 및 투자기회 발굴
- 2. 관할지역 투자전략수립.투자운용.투자모니터링.리스크관리 업무 지원
- 3. 관할지역 국제금융·자본시장 등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·분석·보고
- 4. 관할지역 내 대외 홍보·네트워크 강화
- 5. 기타 본사 요청업무의 수행
- 6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장 투자관리부문의 업무분장

제19조(중권리스크관리실) 증권리스크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헤지펀드는 전통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.

- 1. 전사 리스크관리 기획 및 통할
- 2. 전통자산의 시장, 신용, 유동성 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
- 3. 전통자산 관련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발 기획
- 4. 투자계획 등의 수립에 대한 위험 검토
- 5. 리스크관리 관련 대외업무의 기획, 통할 및 보고
- 6. 전통자산 관련 리스크관리 전문위원회에 관한 업무
- 7. 리스크관리 및 감독 소위원회에 관한 업무
- 8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0조(대체리스크관리실) 대체리스크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대체자산 리스크관리 기획
- 2. 대체자산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
- 3. 대체자산 사전 위험 검토 및 사후위험 관리
- 4. 투자계획 등의 수립에 대한 위험 검토
- 5. 대체자산 리스크관리 관련 대외업무의 기획 및 보고
- 6. 대체자산 관련 리스크관리 전문위원회에 관한 업무
- 7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1조(성과분석실) 성과분석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운용성과평가 업무의 기획과 통할
- 2. 운용성과분석 기준 개발 기획 및 운영

- 3. 운용성과평가보고 및 관련 통계, 자료 제공
- 4. 성과평가시스템의 개발 기획
- 5. 투자데이터 관리 업무의 기획과 통할
- 6. 성과분석 데이터 생성 및 관리
- 7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2조(법무실) 법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한국투자공사법, 동 시행령 및 공사 업무 관련 법령 해석
- 2. 공사 주요 계약서 사전법률 검토
- 3. 공사 표준계약서의 작성
- 4. 소송업무의 기획 및 통할
- 5. 법무자문(법무법인 관련 사항 포함)에 관한 기획 및 통할
- 6. 법령의 조사·연구
- 7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3조(투자오퍼레이션실) 투자오퍼레이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투자오퍼레이션 업무의 기획 및 통할
- 2. 증권대여 관리
- 3. 위탁자산의 의결권 및 권리 행사에 따른 운용지원 업무
- 4. 위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자금의 결제 및 실물자산의 관리
- 5. 위탁자산의 평가 및 회계업무의 기획과 통할
- 6. 위탁자산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
- 7. 위탁자산의 회계, 결산 및 보고
- 8. 위탁자산 운용 관련 계좌개설 및 관리 업무
- 9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4조(투자시스템실) 투자시스템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투자시스템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2. 투자시스템 관련 업무에 관한 기획 및 통할
- 3. 투자시스템 개발 및 운영
- 4. 투자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운영
- 5. 투자시스템 장애 및 투자시스템 관련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
- 6. 투자시스템의 개발·운영 프로젝트의 관리
- 7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장 경영관리부문의 업무분장

제25조(경영기획실) 경영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경영기획)

- 1. 중장기 경영전략·계획의 수립·추진
- 2.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
- 3. 직제 및 조직개편
- 4. 업무분장 및 조정
- 5. 직무전결에 관한 사항
- 6. 정원 책정 및 관리
- 7. 경영전략회의, 부서장회의 주관

(경영혁신 및 평가)

- 8. 경영혁신 및 효율화 계획 수립·추진
- 9. 기관 경영평가 업무 총괄
- 10. 부문 · 본부 · 부서평가 기획 및 추진
- 11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관련 업무 총괄
- 12. 공사경영 관련 제안업무 및 신규사업 개척
- 13. 금융중심지 관련 업무 통할
- 14. 기업문화 개선업무 통할
- 15.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업무 통할

(운영위원회 및 이사회)

- 16.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기획 및 통할
- 17. 이사회 관련 업무 기획 및 통할

(예산)

- 18. 예산업무에 관한 기획과 통할
- 19. 예산의 편성 및 배정
- 20. 손익관리의 통할
- 21. 자본금 조달 및 운용계획의 수립
- 22. 고유계정 자금의 운용 및 관련 업무

(기타)

23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6조(대외협력실) 대외협력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국회, 언론 및 대외 유관기관 업무의 통할
- 2. 정보공개 및 경영공시에 관한 업무
- 3. 홍보 관련 업무
- 4.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
- 5.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
- 6. 연차보고서 기획 및 발간
- 7. 사회공헌활동의 기획 및 통할
- 8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7조 (인사실) 인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인사)

- 1. 인사제도의 기획
- 2. 장단기 인사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3. 직무분석, 직무평가 및 직무관리
- 4. 직원의 임면, 승진, 전보에 관한 사항
- 5. 직원의 복무와 상벌에 관한 사항
- 6. 직원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
- 7.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과 통계
- 8. 인사위원회에 관한 업무

(급여 및 복지후생)

- 9. 급여(퇴직금 포함) 및 복지후생 관련 업무의 기획 및 통할
- 10. 노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
- 11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

(기타)

12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8조(인재경영실) 인재경영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연수)

- 1. 연수제도의 기획 및 통할
- 2. 연수과정과 방법의 개발 및 운영
- 3. 연수평정

(출장)

4. 출장관련 업무의 통할 및 관리

(지식 경영)(Knowledge Management)

- 5. 지식 경영 관련 업무의 기획 및 통할
- 6. 지식 경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 운영, 관리

(기록물관리)

- 7. 기록물관리 관련 업무의 기획 및 통할
- 8. 도서관리업무

(기타)

9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29조(경영지원실) 경영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재무, 회계 및 세무)

- 1. 예산의 집행, 현금의 보관 및 출납
- 2. 회계 및 결산 업무의 기획과 통할
- 3. 고유자산 세무업무의 기획과 통할
- 4. 회계 및 결산시스템 운영
- 5. 각종 회계서류의 작성과 통할

(등기사무)

- 6. 등기이사 및 주소지 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변경 관리
- 7. 법인등기 영문 번역 및 공증 관리
- 8.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

(동산관리)

- 9. 동산관련업무의 기획과 통할
- 10. 물품수급 관리계획의 수립과 운용
- 11. 본사의 업무용 동산 및 물품(인쇄포함)의 구입, 임차, 관리, 운용과 처분
- 12. 본사 제가입권의 구입
- 13. 통신기기(전화 등)의 구입·배치·운영·유지관리 및 처분

(부동산관리)

- 14. 부동산관련업무의 기획과 통할
- 15. 장단기 부동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16. 업무용 부동산의 구입, 임차, 관리, 운용과 처분
- 17. 본사 건물 및 부대시설의 영선(환경미화 포함)관련 기자재 구입

(비상계획)

- 18. 전시,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계획의 통할과 연습
- 19.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, 민방위 물자관리 및 훈련

(안전관리)

- 20. 천재지변, 화재, 건물붕괴 등 재난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
- 21.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,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
- 22. 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45001) 인증 및 유지 관리. 위험성평가 시행

(보안, 경비)

- 23. 인원 / 시설 / 문서 보안 업무, 연간 보안활동계획 수립 및 통할
- 24. 인원 및 기계 경비, 당직 업무의 기획 및 통할

(차량관리)

25. 본사 차량 관련 업무의 기획 및 통할

(계약관리)

- 26. 입찰 및 계약방법에 대한 자문 및 행정절차 지원
- 27. 입찰 및 계약체결에 대한 사전검토
- 28. 계약관련 법규정의 해석 및 내규의 제·개정
- 29. 계약관련 공시사항 이행 및 대·내외 요구자료 작성

30. 계약현황 관리

(기타)

- 31. 전사 의식과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각종 행사의 주관
- 32. 국민신문고 접수 등 민원업무 통할
- 33. 중요인장의 조제, 개폐와 보관
- 34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30조(정보시스템실) 정보시스템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(정보기획)

- 1.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2. 정보시스템 관련업무에 관한 기획 및 통할
- 3. 정보시스템추진위원회 운영

(시스템 운영)

- 4. 정보기기(H/W, S/W)의 구입·배치·유지관리 및 처분
- 5.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
- 6.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
- 7.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
- 8. 정보시스템의 개발·운영 프로젝트의 관리

(정보보호)

- 9. 정보보안
- 10. 개인정보보호
- 11.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연계업무

(기타)

12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5장 부문 소속 외 부서의 업무분장

제31조(준법지원실) 준법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한국투자공사법, 동 시행령, 정관의 개정 관련 업무 통할

- 2.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입안
- 3.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
- 4.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 검토
- 5.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의 작성 및 점검
- 6. 감독기관 및 감사조직과 협조·지원
- 7.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유지 및 보고
- 8. 임직원 윤리ㆍ행동강령의 제·개정 및 운영
- 9.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
- 10. 준법감시 프로그램 기획 및 통할
- 11. 자금세탁방지업무 기획 및 통할
- 12. 금융사고 예방업무 기획 및 통할
- 13. 내규(서식포함)의 제정·개폐 통할 및 해석
- 14.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통할
- 15.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업무 통할
- 16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32조(감사실) 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감사업무의 기획과 통할
- 2. 업무와 회계의 감사
- 3. 운영위원회, 이사회 또는 사장이 위촉하는 감사 관련 업무
- 4. 사정업무
- 5. 업무·회계에 관한 대외감사의 통할
- 6. 대외감사기관과 업무협력
- 7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제33조(전략조정실) 전략조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투자 · 경영의사결정 지원
- 2. 대내외 업무수행 지원
- 3. 부서간 업무 조정
- 4. 내·외빈 의전
- 5. 기타 사장 지시 사항
- 6. 그 밖의 관련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 단, 헤지펀드투 자업무는 헤지펀드투자 TF가 2009년 7월 13일부터 소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1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8월 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1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1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투자오퍼레이션팀은 준법감시인의 채용 및 임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경영관리본부 소속을 유지한다.

부 칙(1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2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8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29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0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3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